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사 건 2026-000251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피 청 구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심 판 청 구 일 2026. 1. 5.

주 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25. 12. 19.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12. 9. 피청구인에게 ‘① 피청구인이 2024. 7. 3. 발표한 농어촌민박 제도개선 및 활성화방안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보고서, 회의록, 관련부서협의 공문, 최종결재서류 등, ② 위 개선방안에 포함된 사업자 지위승계 관련 법령개정 추진 경과, 향후 입법일정, 현재까지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사유를 파악할 수 있는 내부보고

및 계획문서(이하 각각 ‘이 사건 정보 ① ~ ②’ 라 한다,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정보’ 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달 19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②는 부존재하고 이 사건 정보 ①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는 이유를 들어 그 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이미 의사결정 과정이 종료된 정보이고,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국민 혼선을 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추상적이고 근거가 없는 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12. 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달 19일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1) 농어촌민박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검토보고서, 회의록

등 서류 일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료로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 대상이다.

2) 해당 개정안과 관련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이 사건 법률안’이라 한다)이 발의(‘24. 11. 15., 의원)되었으나 법률의 개정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사 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요청하신 자료는 우리 기관에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임에 따라 정보공개법 제11조제5항제1호에 따라 정보 부존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발의안에 대한 추진 경과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법률안(제안일자: 2024. 11. 15., 제안자: 의원 등 11인)은 2024. 11. 1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되어 2025. 2. 28. 상정되어 있다.

다. 우리 위원회는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호 및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그리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같은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으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2)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9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데, 다만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한 부분

살피건대, 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이 사건 정보 ② 제출요구에 대해서도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라고 회신한 점, ②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그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②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②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한 부분

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 ①은 피청구인이 2024. 7. 3. 발표한 농어촌민박 제도개선 및 활성화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내부자료로 해당 정보와 관련된 이 사건 법률안이 현재 법안심사를 위해 상정 중에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법령이 공포·시행되기 전 특정기관 등의 검토의견이 공개될 경우 시시비비에 휘말릴 우려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 ①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아울러 이 사건 정보 ①의 공개로 얻어지는 청구인의 알권리 충족 등의 이익에 비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되는 피청구인의 원활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의 이익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 ①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26. 2. 3.

중 앙 행 정 심 판 위 원 회

